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속국도 휴게시설, 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마련 〉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4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4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고속국도 휴게시설, 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마련 (안 제2 조제2호바목 신설 및 제47조의2)	3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221874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30.
3. 회 부 일 : 2026. 5.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경우 도로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위생 관리 등이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줄음쉼터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및 제4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고속국도 휴게시설, 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마련 (안 제2조 제2호바목 신설 및 제47조의2)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하고 있는 졸음쉼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주차장·졸음쉼터 등의 안전관리 기준과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설></u>	<u>바. 졸음쉼터</u>
<u>바.</u> (생략)	<u>사.</u> (현행 바목과 같음)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 -----

현행	개정안
게시설, <u>주차장</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u>필요한</u>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u>주차장, 졸음쉼터</u> ----- ----- ----- ----- -----. ② ----- - <u>기준, 해당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관한</u>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¹⁾로서 현행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며²⁾, 2026년 7월 기준 고속국도에 253개소가 운영 중임.

1)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2)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현행법 제47조의2³⁾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시행령에 따라 졸음쉼터도 포함)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휴게소의 경우 매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휴게소가 적발되고 있고⁴⁾, 졸음쉼터의 경우에도 청소 관련 업무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⁵⁾가 발견되고 있는 바, 휴게소·졸음쉼터 등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도로법」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4) 브레이크뉴스, “권영진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 위생 ‘허점’ 여전.. 인증 안된 업체 불법 납품까지””(2025.10.16.)

5) 한국도로공사의 2025년 졸음쉼터 환경정비 점검 결과, 청소 인원 구성, 청소 횟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됨

구분	일정	대상	점검 결과
운영현황 실태조사	2025.3.25.~4.8.	55개 지사	-(청소인원구성) 2인1조 24%, 3인 이상 1조 76% -(청소횟수) 2회/일 이하 35%, 3회/일 준수 65%
청소상태 특별점검	2025.8.5~8.8.	14개 지사	- 바닥 변기 오물 때, 창틀 먼지 및 에어컨 곰팡이 제거 미흡 - 관리자 점검 미흡

첫째, 졸음쉼터를 도로의 부속물로 명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목을 신설하는 방식이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체계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2조제2호는 도로의 부속물을 개별 시설별로 열거하기보다는 도로이용 지원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도로부대시설 등 시설의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도로 부속물 가운데 졸음쉼터만을 별도의 목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기능별 유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의규정의 체계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졸음쉼터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제2조제2호가목의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고속국도 휴게소 및 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73호)⁶⁾에서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6)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 현황 분석 시 고객서비스 향상, 위생관리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줄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7)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줄음쉼터 내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의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훈령 등에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화장실 청결,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므로 별도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휴게시설, 줄음쉼터는 설치 위치와 부지 여건, 시설 규모 및 편의시설 등이 다양하여 시설별 여건에 맞게 관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제8조(서비스 향상 노력) ① 한국도로공사 및 시설운영자는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 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 향상
2. 실내·외 청소, 화장실 청결, 누수, 폐기물 처리 등 위생 관리
3.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예방, 화재예방, 조명등 상태 등 안전관리
4. 공정한 납품거래 및 상생협력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줄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13조(줄음쉼터의 유지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줄음쉼터 내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의 보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줄음쉼터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 강설 등 재해의 직후에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줄음쉼터 시설 내 점검표를 비치하여 주간 및 월간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주기적인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줄음쉼터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⑤ 줄음쉼터의 구성요소인 진입부, 진출부, 줄음쉼터 내 주행로, 주차장,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이 사고 및 재해 등으로 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반드시 복구하여야 한다.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하위 지침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

셋째, 안 제47조의2는 조문의 해석상 개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현행 제47조의2⁸⁾는 휴게시설, 주차장 등 보행자가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아니라 해당 시설에 설치되는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제47조의2제2항에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규정할 경우, 문언상 그 대상은 휴게소·졸음쉼터가 아닌 도로안전시설로 해석되어 개정안이 의도하는 규율대상과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이 아닌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도로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휴게시설’ 등 도로 지원시설을 규정

8) 「도로법」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목 신설보다는 가목 개정으로 줄음쉼터를 규정함이 바람직함.

한편, 도로법 제47조의2 개정안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조문에 서비스 품질이나 위생을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